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추가 대북제재 관련 언론보도

남진욱 | 한국개발연구원 전문연구원 | namjw@kdi.re.kr

북한은 2016년 1월 6일 4차 핵실험을 감행하였으며, 불과 한 달여 후인 2월 7일에는 장거리미사일 발사까지 실험하며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 수위를 높였다. 이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3월 2일 만장일치로 ‘유엔 사상 가장 강력한 非 군사적 제재’라고 평을 받은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채택하였으며, 한국·미국·일본 등의 국가는 독자적으로 대북제재를 추가로 가하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4차 핵실험로부터 불과 8개월 후인 9월 9일에 5차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이에 국제사회는 이러한 북한의 도발에 대해 한 목소리로 규탄하는 한편,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나 여러 국가가 가하고 있는 독자제재의 수위보다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논의를 수면 위로 떠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자료에서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와 여러 국가가 가한 다자 대북제재와 양자 독자제재의 내용을 정리하여, 북한에 대해 어떠한 조치가 실제로 취해지고 있는 지 먼저 정리한다. 그리고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어떠한 추가적인 제재가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지에 대한 언론의 보도자료를 정리하여 제공하고자 한다.

1.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의 대북제재

북한이 2016년 1월 6일 4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유엔 안보리)는 곧바로 북한 핵실험을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발표했으며, 새로운 결의 마련에 착수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약 한 달여 후인 2월 7일에 장거리미사일 ‘광명성호’를 발사하였고, 국제사회는 본격적으로 이에 따른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하기 시작했다. 먼저 유엔 안보리의 경우 3월 2일 유엔 헌장 7장 41조(비군사적 제재)에 따라 제재 조치를 대폭 확대·강화하는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안보리결의 2270호). 안보리결의 2270호는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북한의 핵실험 관련 4번째 대북제재 결의다.¹⁾

〈표 1〉 유엔 안보리결의 2270호의 주요 내용

| 분야 | 주요 내용 |
|----------|--|
| 전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 주민이 처한 심각한 고난(grave hardship)에 깊은 우려 표명 북한 주민들의 수요가 미충족된 상태에서 북한이 무기거래로 얻는 소득이 WMD 개발에 전용되는 것을 우려 |
| 우주 협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어떠한 형태의 기술협력 금지(위성발사 또는 우주발사체 포함) (제5항) |
| 무기 거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의 소형 무기(small arms and light weapons) 수입 금지(제6항) 수리, 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한 무기 운송도 결의 위반임을 명확화(제7항) 북 군대의 작전수행 능력 발전 등에 직접 기여 가능한 모든 품목에 대해서 금수 적용(제8항) - 예외: 인도주의·민생 목적 / 제재위 건별 결정시 군사/준군사 조직 및 경찰 훈련을 위한 훈련관·자문관 초청 등 금지 (제9항) |
| 제재 대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체 12개 및 개인 16명 추가(제10항) 자산동결 대상이 되는 경제자산에 선박 등 유·무형 모든 자산이 포함됨을 명확화(제12항) |
| 확산 네트워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재 회피나 위반에 연루된 북한 외교관·정부대표 추방(제13, 14항) - 예외: UN 관련 목적·사법절차상 필요성·인도주의 목적 / 제재위 건별 결정시 제재 개인·단체의 사무소 폐쇄 및 북한인 대표 추방(제15항) 북한의 위장회사 활용에 주목, 제재위가 관련 개인·단체를 규명해 적절할 경우 제재대상으로 지정 등록 지시(제16항) 북한의 민감 핵활동·미사일 개발에 특화된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 방지(제17항) |
| 해운·항공 운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국 영토 내 북한 행·발 화물 검색 의무화(제18항) 북한에 대한 항공기·선박 대여 및 승무원 제공 금지(제19항) - 예외: 민생목적·불법행위 기여 방지 노력 제재위에 사전 통보시 북한내 선박 등록, 북한기 사용, 북한 선박에 대한 소유·대여·운용·선급·인증·보험제공 금지 (제20항) - 예외: 민생목적·불법행위 기여 방지 노력 제재위에 사전 통보시 금지품목 적재 의심 항공기의 회원국 이착륙 및 영공 통과 불허(제21항) - 예외: 비상착륙 제재 대상자 소유·운영 및 불법활동 연루 의심 선박의 회원국 입항 금지(제22항) OMM 선박(31척)이 자산동결 대상임을 확인(제23항) |
| 생화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의 화학·생물무기 포기 결정, 생물무기금지협약(BWC) 이행 및 화학무기 금지협약(CWC) 가입·이행 촉구(제24항) |

1) 앞선 유엔 안보리의 세 차례 대북제재 결의는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94호(2013년)가 채택된 바 있다. 탄도미사일 관련 결의 또한 1695호(2006년), 2087호(2013년)가 있으며, 2087호에도 제재 요소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

<표 1>의 계속

| 분야 | 주요 내용 |
|------|--|
| 수출통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탄도미사일 개발에 사용가능한 물품 목록 확대, 생물·화학무기 수출통제 리스트 업데이트 지시 (제25, 26항) · WMD 관련 catch-all 수출통제 의무화, catch-all 물품에 대한 압류·처분 의무화(제27, 28항) |
| 대외교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석탄·철·철광 수출·공급·이전 금지(제29항) - 예외: 민생목적으로 WMD와 무관한 경우, 러시아산 석탄을 나진항 통해 수출하는 경우 · 북한의 금·바나듐광·티타늄광·희토류 수출 전면금지(제30항) · 대북 항공유(로켓연료 포함) 판매·공급 금지(제31항) - 예외: 해외 북한 민항기의 귀국용 재급유, 인도주의적 목적으로 제재위 사전 허가시 |
| 금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MD 관련 북한정부·노동당 소속단체에 대한 자산동결, 자산·재원 이전 금지(제32항) - 예외: 외교공관, 인도적 활동 · 북한은행의 회원국내 지점·사무소 신규 개설 등 활동 금지, 90일내 기존 지점 폐쇄 및 거래활동 종료(제33항) · 회원국 금융기관의 북한내 사무소·은행계좌 개설 등 활동 금지(제34항) · 90일내 WMD 관련 기존 사무소·계좌 폐쇄(제35항) - 예외: 인도지원,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유엔활동 등 · WMD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대북 무역에 대한 모든 공적·사적 금융지원 금지(제36항) · 금(gold)의 거래에 대해서도 기존 금융거래 금지 의무 적용 명확화 (제37항) · FATF 권고 7 이행 촉구(제38항) |
| 사치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시목록에 7개 품목 추가(모두 12개 품목으로 확대) (제39항) |

자료: 외교부 보도자료, 2016. 3. 3.

한편, 일부 국가들은 유엔 안보리결의 2270호를 이행할 것이라고 발표하는 한편, 독자적으로 대북 제재안을 공표하기도 했다. 먼저 한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결의 2270호가 채택되기 전, 2월 10일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할 것을 발표했다. 그리고 이어 3월 8일에는 유엔 안보리결의 2270호에 추가적인 독자적인 대북 제재안을 발표하기 이르렀다.

<표 2> 한국의 독자적 대북제재의 주요 내용

| 분야 | 주요 내용 |
|------------------------|---|
| 개성공단 중단 (2월 10일 발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 · 한국전력이 공급해 온 개성공단의 전기 단전 |
| 금융제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책임이 있는 개인 40명, 단체 30개 금융제재 · 우리 국민과의 외환거래·금융거래 금지, 국내자산 동결 |
| 해운통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에 기항한 외국 선박의 180일 이내 국내 입항 전면 불허 · 제3국 선박의 남북 항로 운항 금지 · 북한의 제3국 편의치적선박의 국내 입항 금지 |
| 수출입 통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산 물품의 국내 위장반입 차단 - 2010년 5·24 조치 이후 2015년 10월까지 총 71건의 북한산 물품 위장반입 적발 · 남북간 물품 반출입 통제 강화 · 북한에 특화된 별도의 감시대상품목 목록 작성·통보 |
| 영리시설 이용자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국민, 재외 동포의 해외 북한식당 등 이용 자제 당부 |

자료: 통일부 발표, 2016. 2. 10; 국무총리실 보도자료, 2016. 3. 8.

한국과 함께 가장 적극적으로 독자적 대북제재를 가한 나라로는 미국과 일본이 있다. 먼저 미국은 2016년 북한 제재 및 정책 강화법(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of 2016)을 2월 12일 미국 상하원 의회에서 통과시킨 후, 2월 18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서명으로 공식 발효시켰다.

이 법을 발효시킨 데 이어 3월 2일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안을 이행하기 위하여 3월 16일에는 대북제재 행정명령 제13722호를 발행했다. 특히 이 행정명령은 2월 18일 발효된 대북제재 강화법을 이행하기 위한 일종의 '시행령'이면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을 보완하는 성격을 띠고 있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이 북한을 지정해 제재를 가하는 6번째 행정명령이다.²⁾

<표 3> 미국의 2016년 북한 제재 및 정책 강화법 주요 내용

| 분야 | 주요 내용 |
|-------------|--|
| 금융제재 | 자금출 차단 ·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사치품 구매에 쓸 수 있는 달러 등 경화(hard currency) 획득을 차단 · 핵 개발을 지원하는 금융기관 및 개인 제재 |
| 제재 대상 처벌 | · 대량살상무기 개발이나 인권 유린 활동에 자금조달 목적으로 북한이 광물과 석탄을 판매할 경우 제재 대상으로 지정 · 사이버공간에서 미국의 국가안보를 침해하거나 북한 인권유린 행위에 가담한 개인과 단체들을 처벌할 수 있음 |
| 제재의 범위 | · 북한은 물론 북한과 직접 불법거래를 하거나 북한의 거래를 쉽게 하는 자 또는 도움을 준 제3국의 '개인'과 '단체' 등으로 확대할 수 있음 |
| 기타 | ·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검토와 김정은의 책임을 검토할 것을 촉구 · 미 재무부에 이 법안 입법 이후 180일이 지나기 이전에 북한을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 |

자료: 각종 자료를 토대로 자체 정리.

<표 4> 미국의 대북제재 행정명령 제13722호의 주요 내용

| 구분 | 주요 내용 |
|-------|---|
| 제재 대상 | · 북한 노동자 인력 송출 책임역할·참여·조력 · 북한의 수송·채광·에너지·금융서비스 산업 활동 · 북한 당국이나 노동당을 대신해 금속·흑연·석탄·소프트웨어의 판매·공급·이전·구입 · 인권침해, 사이버안보, 검열의 책임역할·관여·조력 |
| 제재 내용 | · 미국 안에 있는 관련 개인 및 단체의 미국 내 자산 동결 및 이전·지불·수출·거래 등 금지 |
| 기타 | · 모든 상품·서비스·기술의 대북 수출 금지 · 대북 신규 투자 금지 |

자료: 각종 자료를 토대로 자체 정리.

2) 앞선 5개의 행정명령으로는 행정명령 13382호(2005. 6. 28), 13466호(2008. 6. 26), 13551호(2010. 8. 30), 13570호(2011. 4. 18), 13687호(2015. 1. 2)가 있으며, 주로 미 관할권 내 자산 동결 및 거래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행정명령이 채택된 사유로는 핵 확산, 무기·사치품 거래 그리고 사이버공격·인권 침해 등이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슬기(2016, pp.60~61)를 참고하라.

일본 정부 또한 한국 및 미국과의 공조 속에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을 발표한 2월 10일 대북 독자제재 조치를 발표했으며, 19일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를 승인했다. 일본의 경우 이미 2009년 6월부터 북한에 의한 납치 피해자 문제로 북한에 대한 수출입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을 정도였다. 새로운 독자적 대북제재의 경우 인적왕래, 자금이동 그리고 북한 선박 및 북한을 경유한 제3국의 선박에 대한 입항금지 조치를 강화했다.

유럽연합(Europian Union: EU) 또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이행하면서, EU 자체적인 제재를 단행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2270호에 담긴 모든 제재 내용에 추가적으로 EU 자체의 제재조치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먼저 안보리 결의안 채택 이틀 후인 3월 4일에는 북한 제재 대상 리스트에 유엔 제재명단에 새로 들어간 개인 16명과 단체 12개를 추가했으며, 3월 31일에는 추가 무역 및 금융 제재를 단행했다. 이어 5월 20일에는 제재 명단에 개인 18명과 북한의 미사일 개발 담당 부대를 명단에 추가했는데, 제재 대상자는 EU 역내 여행이 금지되고 자산이 동결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월 27일에 광범위한 추가 제재를 발표했는데, EU 가입국 뿐만 아니라 마케도니아,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 등 9개 비 EU 가입국 또한 EU의 대북제재 동참을 6월 16일 선언했다.

그 외에 독자적 대북제재를 가한 나라로는 스위스가 있다. 스위스 연방정부는 5월 18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에 따른 조치로 대북 독자제재를 단행했다. <표 7>의 주요 내용 외에도 북한 국적자에 대한 스위스에서의 고등 물리학, 컴퓨터, 핵 공학 관련 과목 수강이 금지됐으며, 북한 관리에 대한 군사훈련도 이 대북제재를 통해 전면 금지됐다.

<표 5> 일본의 독자적 대북제재 주요 내용

| 분야 | 주요 내용 |
|--------|---|
| 인적왕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국적을 가진 모든 사람의 일본 입국을 원칙적으로 금지 ·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 당국의 직원 및 그들을 보좌하는 사람들이 북한으로 출국한 후 일본으로 재입국하는 행위 또한 금지 · 일본인의 북한방문 자제 요청 · 일본 국가 공무원의 방북 금지 · 북한 국적 선박의 선원의 일본상륙 금지 · 재외 외국인 중 핵과 미사일 기술자인 사람들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이들의 일본 입국 금지 |
| 자금이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에 현금을 가지고 방문할 때 10만엔, 약 870달러부터 신고를 의무화 (종전 100만엔, 약 8,700달러에서 강화) · 북한으로의 모든 송금 전면 금지 (인도적 목적으로 10만엔, 약 870달러 이하 제외) · 자금 동결 대상 범위를 개인과 단체로 확대 |
| 선박입항금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적 목적을 포함해 모든 북한 국적 선박의 일본 입항 금지 · 북한 선박 뿐 아니라 북한을 경유한 제3국의 선박 또한 일본 입항 금지 |

자료: 각종 자료를 토대로 자체 정리.

<표 6> EU의 독자적 대북제재 주요 내용

| 분야 | 주요 내용 |
|-------|---|
| 수입 통제 | · 북한산 석유제품, 사치품 및 의 군민 양용 품목의 수입 전면 금지 · 무기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품목, 기술에 대한 목록 추가 |
| 금융 통제 | · 북한과의 무역에 재정적 도움을 제공하거나 사전 허가 없는 북한과의 자금거래 행위 전면 금지 · 북한의 EU 회원국 내 모든 투자 금지 · EU 회원국 국적자가 북한의 불법 활동에 관여된 기업에 투자 금지 |
| 운송 통제 | · 북한 국적의 항공기가 EU 회원국 상공을 비행하거나, 착륙 또는 이륙하는 것을 전면 금지 · 북한 선박의 EU 회원국 항구 입항 전면 금지 |

자료: European Union, "Council Decision (CFSP) 2016/849 of 27 May 2016 concerning restrictive measures against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repealing Decision 2013/183/CFSP," 27 May 2016 (Available from: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HTML/?uri=CELEX:32016D0849&from=EN>, Accessed: 2016. 10. 21).

<표 7> 스위스의 독자적 대북제재 주요 내용

| 분야 | 주요 내용 |
|--------|--|
| 수출입 통제 | · 사치품 수출 제재품목 대폭 확대(고급 시계, 스노우모빌, 스포츠용품 등) · 북한과의 모든 거래는 예외없이 연방경제부 산하 대외경제본부의 사전 승인을 거쳐야 함 · 항공우의 대북 수출 및 공급 전면 금지 · 북한산 석탄, 철, 희토류, 금 수입 금지 |
| 금융 통제 | · 스위스 내 북한 관련 자산 동결 및 금융 서비스 금지 · 스위스 은행의 북한 내 지점, 자회사 또는 관련 기관 개설 금지 · 스위스 은행의 기존 북한지점 및 계좌는 6월 2일까지 폐쇄 · 단, 스위스 내 외교공관 활동에 필요한 자금은 예외 |
| 운송 통제 | · 북한 국적의 항공기가 EU 회원국 상공을 비행하거나, 착륙 또는 이륙하는 것을 전면 금지 · 해상 및 항공 운항 관련 북한 기업과 전세 또는 임차 계약 금지 |

자료: 『조선일보』, 「RFA, "스위스 '초강력' 단독 대북제재 실행"...북한 자산 전면 동결·은행 계좌 폐쇄」, 2016. 5. 19; Der Schweizerische Bundesrate, "Verordnung über Massnahmen gegenüber der Demokratischen Volksrepublik Korea," 18. Mai 2016 (Available from: https://www.admin.ch/opc/de/official-compilation/2016/index_48.html).

중국의 경우 한·미·일 등의 국가와는 달리 따로 독자제재를 가하지는 않고 있으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찬성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에 중국 상무부는 대북제재 결의에 대한 구체적 이행 조치로 북한과의 수출입을 금지하는 품목 25종을 4월 5일에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북한산 석탄, 철, 철광석, 금, 티타늄, 희토류 등은 수입 금지 품목으로 지정되었으며, 항공연료, 로켓연료 등은 수출 금지 품목으로 지정되었다. 다만 결의안이 북한 민생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수출입 금지 품목 중에서도 석탄, 철, 철광석은 민생목적으로 수입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해 주고 있다.³⁾ 또한 항공연료의 경우 인도주의 목적에서 유엔 안보리가 승인해 준다면, 북한 민항기가 해외에서 연료를 급유 받을 때를 예외로 인정해 주고 있다.

〈표 8〉 중국 상무부 발표(2016. 4. 5) 대북제재 품목

| HS 12단위 | 품목명(원문) | 품목명(한국어) |
|------------|--|------------------------------|
| 2701110010 | 无烟煤 | 무연탄 |
| 2701110090 | 无烟煤滤料 | 무연탄(여과) |
| 2701121000 | 未制成型的炼焦煤 | 코크스용탄 |
| 2701129000 | 其他烟煤 | 기타 유연탄 |
| 2701190000 | 其他煤 | 기타 석탄 |
| 2601111000 | 未烧结铁矿砂及其精矿 | 적철광 |
| 2601112000 | 未烧结铁矿砂及其精矿 | 자철광 |
| 2601119000 | 平均粒度大于6.3mm的未烧结铁矿砂及其精矿 | 기타 철광(평균 입자 크기가 6.3mm보다 큰 것) |
| 2601120000 | 已烧结铁矿砂及其精矿 | 기타 철광(응결시킨 것) |
| 2601200000 | 焙烧黄铁矿 | 황화철광 |
| 7201100010 | 高纯生铁(含锰量<0.08%,含磷量<0.03%,含硫量<0.02%,含钛量<0.03%) | 고순도선철 |
| 7201100090 | 非合金生铁,含磷量≤0.5%(含锰量<0.08%,含磷量<0.03%,含硫量<0.02%,含钛量<0.03%的高纯生铁除外) | 비합금선철(인의 함유량이 0.5% 이하인 것) |
| 7201200000 | 非合金生铁,按重量计含磷量>0.5% | 비합금선철(인의 함유량이 0.5%를 초과하는 것) |
| 7201500010 | 合金生铁 | 합금선철 |
| 7201500090 | 镜铁 | 경철 |
| 2616900001 | 黄金矿砂 | 금 광석 |
| 2616900009 | 其他贵金属矿砂及其精矿 | 기타 귀금속 광석 및 정광 |
| 2614000000 | 钛矿砂及其精矿 | 티타늄광 |
| 2615909090 | 钒矿砂; 钒精矿 | 바나듐광 |
| 2530902000 | 其他稀土金属矿 | 기타 희토류광 |
| 2710121000 | 车用汽油及航空汽油,不含生物柴油 | 항공 연료 (바이오 디젤 제외) |
| 2710122000 | 石脑油,不含生物柴油 | 나프타 항공연료 (바이오 디젤 제외) |
| 2710191100 | 航空煤油,不含生物柴油 | 등유 항공연료 (바이오 디젤 제외) |
| 2710191910 | 正构烷烃(C9-C13),不含生物柴油 | 등유 로켓연료; 노르말 파라핀(바이오디젤 제외) |
| 2710191990 | 其他煤油馏分的油及制品,不含生物柴油 | 기타 등유 로켓연료 (바이오디젤 제외) |
| 총 25개 | | |

자료: 中國 商务部, 商务部 海关总署公告2016年第11号 关于对朝鲜禁运部分矿产品清单公告, 2016. 4. 5.

3) 금, 티타늄, 희토류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어 6월 14일에는 중국 상무부와 공업·정보화부, 국가원자력기구, 해관총서 등이 ‘무기 제조에 전용될 수 있는 품목 및 기술에 대한 추가적인 대북 수출 금지 목록’을 공동 발표했다.⁴⁾ 이에 따르면 대량살상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40여 가지 품목이 대북수출금지 목록에 새로 추가되는데, 이들 품목은 군과 민간 이중 품목으로 핵·미사일이나 화학생물학 무기 같은 대량 살상무기 제조에 쓰일 수 있다.⁵⁾

러시아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북한에 대한 독자제재를 가하지는 않고 있다. 러시아 외무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이행하기 위한 러시아 대통령령 초안을 작성했다고 5월 6일 발표했으나,⁶⁾ 그 이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종 서명하여 대통령령이 발표됐다는 소식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다만 러시아는 외무부 대변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다.

II.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의 대북제재 관련 보도

4차 핵실험을 감행한지 불과 8개월 후인 9월 9일, 북한은 5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유엔 안보리는 곧바로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책 논의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한 달여가 지난 10월 현재 아직 새로운 유엔 안보리 결의는 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핵실험 이후 전세계 언론은 새로운 대북제재 방안에 대해 보도를 하고 있기에 이를 <표 9>에 정리하였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는 사실 이미 유엔 역사상 가장 강력한 非 군사적 제재라는 평을 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제재 방안이 언론을 통해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다. 다만 가장 많이 언급되는 제재 방안은 현재 ‘민생용’일 경우 거래 가능한 북한산 석탄 수입을 용도와 상관없이 전면 금지시키는 것이다. 이는 특히 한국·미국·일본 언론을 중심으로 많이 보도되고 있다. 금융부문에서는 제재대상과 자산동결하는 폭을 확대시키자는 논의가 잦다. 또한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하여 북한 기업과 거래하는 기업이나 은행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북한정권에 주요 외화수입원 중 하나로 뽑히는 북한의 해외노동자 송출에 대한 제한 방안도 보도되고 있다.

4) 中國 商務部, 工業和信息化部 國家原子能機構 海關總署公告2016年第22號 關於增列禁止向朝鮮出口的两用物項和技术清單公告, 2016. 6. 14.

5) 『조선일보』, 「核·미사일에 쓰일 40품목… 중국, 對北수출 추가 금지」, 2016. 6. 16.

6) 『TASS』, 「Russia's Foreign Ministry Restricts Ties with North Korean Banks」, 2016. 5. 6 (Available from: <http://tass.ru/en/politics/874275>, Accessed: 2016. 10. 21).

<표 9>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의 추가 대북제재 방안 관련 주요 보도내용

| 출처 | 일자 | 주요 내용 |
|--------------------------------------|-------|--|
| 언론보도 (연합뉴스) | 9. 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산 석탄 거래 금지를 '민생 목적'으로까지 확대 · 품목을 가리지 않고 광물 전체에 대한 거래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방안 · 중국에 대북 석유수출의 금지 재차 압박 · 제재대상과 더불어 자산동결 폭 대거 확대 ·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 · 북한 해외노동자의 '강제 노동' 이슈화 · 북한 정치범 수용소 실태 문제 이슈화 · 테러지원국 재지정 |
| 언론보도 (Wall Street Journal) | 9. 1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이행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을 제재 |
| 마쓰다 야스히로 도쿄대 교수 (니혼게이자이 신문) | 9. 1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제재에서는 '민생용'도 포함해 금수조치를 결정해야 함 |
| 언론보도 (요미우리신문) | 9. 1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은 이미 강도 높은 대북제재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선택지는 제한되어 있음. · 재입금 금지의 대상 확대와 핵개발 등에 관여가 의심되는 자산동결 대상 확대 등을 주축으로 제재가 강화될 것 |
| 제이콥 루 미국 재무장관 (자유아시아방송) | 9. 1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용한 모든 금융제재 수단 동원을 통해 북한 압박 |
| 쑤루 현대국제관계연구소 연구원 (sina.com) | 9. 1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보리 결의 2270호를 계속 이행하는 동시에 또 다른 조치를 위해 북한의 자금줄을 끊고 민감품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함. · 대북 원조 및 북중 관계를 북한의 행동과 연계시켜야 함. |
| 니콜라스 카스프썩 ISS 컨설턴트 (ISS Today) | 9. 1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프리카 국가들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도울 수 있는 아프리카연합 평화 안보 위원회(African Union's Peace and Security Council)하에 있는 제재 관련 부속 기구를 재활성화 시키는 방안 |
| 벤 로즈 미국 NSC 부보좌관 (연합뉴스) | 9. 2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에 전략물자 대북 수출 금지 협력 촉구 |
| 존 박 MIT 교수 (The Conversation) | 9. 2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기업 경영자 대부분이 외교관을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들을 추방할 수 있다면 북한의 자금조달을 지연시킬 수 있을 것 · 북한은 중국 중개인을 통해 무역을 하여 제재를 피하고 있으므로, 중국 정부가 부패방지 기구를 통해 북한 조달 대리인들과 협력하고 있는 중개인들을 겨냥할 필요가 있음. |
| 토시미츠 시게무라 와세다대 교수 (nippon.com) | 9. 2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책으로는 석유의 전면적인 금수 조치가 있음. · 철저한 금융제재 / 핵·미사일 부품의 수출 검사 및 해상 봉쇄 / 인적 왕래 금지 / 유럽 국가와의 외교 단절 등의 매우 강력한 제재 필요 |
| 스콧 스나이더 CFR 선임연구원 (Forbes) | 9. 2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대북 안보리 결의에 대한 협상은 석탄 수출, 해외노동자 송출, 관광업, 적물수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이번에도 중국의 비협조로 제재가 효과적이지 않을 경우, 미국은 북한산 석탄을 사용하는 중국의 철강기업에 대해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해야 함. · 랴오닝 홍상그룹과 같이 북한과 평소대로 거래를 지속하는 중국 중소기업 겨냥 · 북한 사람들과 거래하는 중국 은행을 엄중 단속할 것은 중국 당국에 촉구 · 선박 제재의 이행 강화 |
| 언론보도 (자유아시아방송) | 9. 2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하원 의원, '북한 국제금융망 차단 법안' 공동 발의 · 북한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의 금융거래망에 접속 차단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기축통화인 달러로 거래되는 세계 자본주의 금융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 |

<표 9>의 계속

| 출처 | 일자 | 주요 내용 |
|--|--------|--|
| 댄 드 루스 Foreign Policy 특파원 (Foreign Policy) | 10. 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란식 대북 제재를 마련 · 미국은 이란을 제재할 때 이란과 거래를 하는 글로벌 은행들을 대상으로 '세컨더리 보이콧'을 감행해 이란 경제를 마비시킨 바 있음. · 다만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행이 쉽지 않을 것 |
| 언론보도 (교도통신) | 10. 1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과 EU가 준비 중인 대북 인권 비난 결의안은 제재 대상자 확대를 검토하도록 유엔 안보리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김정은 및 여타 다른 간부들도 제재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내용 |

자료: 각종 언론 보도자료를 정리함. 자세한 출처는 참고문헌을 참고하라.

참고문헌

- 김슬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KDI 북한경제리뷰』, 2016년 2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16.
- 『교도통신』, 「日-EU, 인권 결의 초안 “대북 제재 대상 확대 촉구”」, 2016. 10. 12.
- 국무총리실, 「우리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 설명자료」, 2016. 3. 8.
- 『연합뉴스』, 「〈北 핵실험〉 美, 대북석유수출 금지 등 모든 구멍 차단 나설 듯」, 2016. 9. 9.
- 『연합뉴스』, 「일본, 대북제재 '구멍' 中에 주목…"이번에도 중국이 열쇠"」, 2016. 9. 11.
- 『연합뉴스』, 「美 中 전략물자 대북수출차단 충실이행해야…연필 하나도 안돼」, 2016. 9. 22.
- 외교부, 「유엔 안보리 대북한 제재 결의 2270호 채택 보도자료」, 2016. 3. 3.
- 『자유아시아방송(RFA)』, 「미 재무 “금융수단 활용 대북제재 강화”」, 2016. 9. 12.
- 『자유아시아방송(RFA)』, 「“국제금융망서 북 퇴출” 미 하원 법안 제출」, 2016. 9. 29.
- 『조선일보』, 「RFA, “스위스 ‘초강력’ 단독 대북제재 실행”…북한 자산 전면 동결·은행 계좌 폐쇄」, 2016. 5. 19.
- 『조선일보』, 「核·미사일에 쓰일 40품목… 중국, 對北수출 추가 금지」, 2016. 6. 16.
- 통일부, 「개성공단 전면 중단 관련 정부 설명」, 2016. 2. 10.
- 『The Conversation』, 「To curb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follow the money」, 2016. 9. 21.
- Der Schweizerische Bundesrate, “Verordnung über Massnahmen gegenüber der Demokratischen Volksrepublik Korea,” 18. Mai 2016 (Available from: https://www.admin.ch/opc/de/official-compilation/2016/index_48.html).
- De Luce, Dan, “U.S. Weighs Iran-Style Sanctions on North Korea, Risking a Rift With China,” *Foreign Policy*, October 6, 2016 (Available from: <http://foreignpolicy.com/2016/10/06/u-s-weighs-iran-style-sanctions-on-north-korea-risking-a-rift-with-china>, Accessed: 2016. 10. 21).
- European Union, “Council Decision (CFSP) 2016/849 of 27 May 2016 concerning restrictive measures against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repealing Decision 2013/183/CFSP,” 27 May 2016 (Available from: <http://eur-lex.europa.eu/legal->

content/EN/TXT/HTML/?uri=CELEX:32016D0849&from=EN, Accessed:
2016. 10. 21).

『ISS Today』, 「Op-Ed: Africa's role in strengthening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2016. 9. 18 (Available from: <http://www.dailymaverick.co.za/article/2016-09-18-op-ed-africas-role-in-strengthening-sanctions-against-north-korea>, Accessed: 2016. 10. 21).

Snyder, Scott, "How The U.S. Can Strengthen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Forbes*,
September 27, 2016 (Available from: <http://www.forbes.com/sites/scottasnyder/2016/09/27/how-the-u-s-can-strengthen-sanctions-against-north-korea>, Accessed: 2016. 10. 21).

『TASS』, 「Russia's Foreign Ministry Restricts Ties with North Korean Banks」, 2016.
5. 6 (Available from: <http://tass.ru/en/politics/874275>, Accessed: 2016. 10. 21).

Toshimitsu, Shigemura, "Kim Jong-un's Sword of Damocles," *nippon.com*, 2016.
9. 26 (Available from: <http://www.nippon.com/en/currents/d00248>, Accessed:
2016. 10. 21).

中國 商务部, 商务部 海关总署公告2016年第11号 关于对朝鲜禁运部分矿产品清单公告, 2016. 4. 15.

中國 商务部, 工业和信息化部 国家原子能机构 海关总署公告2016年第22号 关于增列禁止向朝鲜出口的两用物项和技术清单公告, 2016. 6. 14.